

(사업방법서 별지)

무 배 당 플 러 스 변 액 연 금 보 험

1. 보험종목의 명칭

- 가.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1종 - 거치형
- 나.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1종 - 적립형
- 다.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2종 - 거치형
- 라.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2종 - 적립형
- 마.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3종 - 거치형
- 바.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3종 - 적립형

2.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계약형태

가. 1종 및 3종

보험기간	(1) 사망보장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2) 연금지급기간 사망보장기간 종료후부터 종신까지(단, 확정연금의 경 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45세 ~ 80세
계약형태	(1) 보증기간부종신연금 - 정액형(10, 15, 20년, 100세 보증지급) - 3% 체증형 (10, 20년 보증지급 / 체증기간 10, 20년(보 증지급기간과 동일)) (2) 확정연금 (5, 10, 15, 20년)

	(3) 상속연금 단, 계약체결시에는 10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으로 함.
--	---

나. 2종

보험기간	(1) 사망보장기간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의 종료일까지 (2)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일 이후 10년 (3)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단, 확정연금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	35세 ~ 70세
연금지급개시나이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나이 + 10세
계약형태	(1) 자유설계노후자금 (2) 보증기간부종신연금 - 정액형(10, 15, 20년, 100세 보증지급) - 3% 체증형 (10, 20년 보증지급 / 체증기간 10, 20년(보증지급기간과 동일)) (3) 확정연금 (5, 10, 15, 20년) (4) 상속연금 단,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10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으로 함

3.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종, 2종 및 3종)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거치형	일시납	만15세 ~ (A-7)세	일시납

적립형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A-7)세납	만15세 ~ (A-10)세	월 납
-----	--	----------------	-----

단, (A-7)세납의 납입기간은 5년납 이상이어야 하며, A는 1종 및 3종의 경우 연금개시나이,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를 의미함

4.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거치형 : 1,000만원 이상

나. 적립형 :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1) 기본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1구좌당)
7년납 미만	만15세 이상	매월 30만원 ~ 100만원
7년납 이상 10년납 미만	만15세~55세	매월 20만원 ~ 100만원
	56세 이상	매월 30만원 ~ 100만원
10년납 이상	만15세~55세	매월 10만원 ~ 100만원
	56세 이상	매월 30만원 ~ 100만원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성립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매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로 한다.

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로 한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한다.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선납보험료의 납입은 3개월분 이상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할인율은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

선납보험료는 일반계정에 계상한 후 납입응당일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9.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시까지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가’에서 정한

금액 중 특별계정 적립보험료(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 ‘나’ 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과 같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2영업일』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1종 및 3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신청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회사는 ‘가’ 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가’ 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30% 이상, 적립형은 1구좌당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추가적립금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적립형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 및 자유설계적립금(2종) 계산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의 적용은 계약일로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한다. 확정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연단위 계약해당일의 공시이율로 한다.
- (3)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계정별 자산규모가 작아 구분산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다.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 \text{회사채(무보증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2)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3)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4) 국고채 가중치($\beta 1$), 회사채 가중치($\beta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고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 이상 100% 이하로 결정한다.

(나) 운용자산이익률

1)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2)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

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13개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13개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3)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1)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 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2)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3)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4)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수입보험료」 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 「수입보험료」 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5)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한다.
- (6)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규정」에 따른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단,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단, 1.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다. 회사가 보험료의 납입연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1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1종, 2종 및 3종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

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함)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서 1종 및 3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또한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라.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사’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회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사’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와 최저연금지급금 보증비용(1종에 한함) 및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2종에 한함)

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한다.

15. 보험료의 납입중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계약으로 납입중지시 계약자적립금이 납입중지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7. 최소거치기간에 관한 사항

「최소거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완료 후부터 1종 및 3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까지,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말하며 5년납의 경우에는 5년, 5년납 이외(거치형 포함)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18.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거치형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 보험료를,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단,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에는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자유설계노후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며, 자유설계노후자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0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1종 및 3종의 경우 약관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종의 경우 약관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1종 및 3종의 경우 약관 제1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2종의

경우 약관 제15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 한 경우, 제15호 (보험료의 납입중지에 관한 사항), 제19호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1호 (최저사망보험금), 제23호 (Step-up 보증금액) 및 제24호 (최저연금적립금(1종 및 2종에 한함))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계약자적립금 인출 또는 감액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감액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인출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특별계정운용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1종에 한함) 및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2종에 한함)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의 계산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 (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사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감소분은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 (4) 1종의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의 계산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 (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 감소분은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 (5)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준비금의 계산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 (가)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준비금은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자유설계노후자금 보다 적은 경우 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Step-up보증금액의 20% 보다 작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나)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준비금 감소분은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 (6) 특별계정 운용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1종에 한함) 및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2종에 한함)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1종에 한함) 및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2종에 한함)을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 (1) 1종, 2종 및 3종의 펀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채권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국공채 및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 기타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후순위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CD, 기업어음, 기타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나)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설정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다) 롱텀밸류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가치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중 기업의 펀더멘탈(매출, 이익, 자산가치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라) 액티브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내재가치가 높은 KOSPI200 종목 및 업종 대표주, 우량 코스닥 종목 등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마) 배당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단, 주식은 현금배당이 기대되는 주식 위주로 투자한다.

(바) 스마트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CD,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 자산의 투자는 기업본질 가치 분석을 통하여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신성장 미래 기업, 이익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 글로벌주식형

해외 주식(ETF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은 한국 주식에 일부 비중을 보유할 수 있음) 등에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해외 주식관련 자산(수익증권 포함)은 ETF,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 (1)에서 운용 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에서 정한 투자가능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한다.

(2)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3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90959%)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3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118356%)
롱텀밸류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5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123836%)
액티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137534%)
배당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137534%)
스마트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137534%)
글로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54%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124384%)

(3) 펀드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 한도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27397%)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41096%)
롱텀밸류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8%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76712%)
액티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8%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76712%)
배당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3%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63014%)
스마트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60274%)
글로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0.00054795%)

(4) 펀드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

고 한도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플러스알파인텍스주식형, 롱텀밸류주식형, 액티브주식형, 배당주식형, 스마트주식형, 글로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12%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3288%)

(5) 펀드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 한도로 한다.

구 분	비 용
채권형, 플러스알파인텍스주식형, 롱텀밸류주식형, 액티브주식형, 배당주식형, 스마트주식형, 글로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23%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6301%)

(6)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2) 내지 (5)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판매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 의 (1)에서 규정한 펀드 중 채권형펀드를 포함하여 3 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5% 단위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1 종 및 3 종의 경우 사망보장기간이 12 년 이하인 경우 채권형펀드의 투입 비율은 70% 이상으로 하며, 사망보장기간이 12 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펀드의 투입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적립형의 경우 사망보장기간이 12 년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80% 이상으로 한다.

2 종의 경우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

년 이하인 경우 채권형펀드의 투입비율은 70% 이상으로 하며,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펀드의 투입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

(2)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른다.

(4)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5) (4)에 따라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종 및 3종

- 1) 사망보장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70% 이상
- 2) 사망보장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50% 이상
다만, 적립형의 경우 사망보장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나) 2종

- 1)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70% 이상
- 2)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50% 이상

(6) 1종 및 3종의 경우 (1) 내지 (5)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 - 3년」 시점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자동 조정된다. 이후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적립형의 경우 사망보장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 3년」 시점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자동 조정된다. 이후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2 종의 경우 (1) 내지 (5)에도 불구하고, 평가일에 보증기준액이 직전 보증 기준액 보다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자적립금이 자동 조정된다.

(가)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 년 이하인 경우

평가일의 채권형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자동 조정된다.

(나)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 년 초과인 경우

평가일의 채권형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펀드의 비율이 50%가 되도록 자동 조정된다.

(8) 회사는 (2)에 따른 펀드의 변경, (4)에 따른 펀드 적립금의 이전 및 1 종의 경우 약관 제 23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7 항, 2 종의 경우 약관 제 24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7 항에 따라 1 종 및 2 종간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1 종의 경우 약관 제 49 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 2 종의 경우 약관 제 50 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2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9)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8)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10) 회사는 (4)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4)의 현금이전시 공제한다. 단, 수수료 중 5,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연 4 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1)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1) 및 (2)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 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0.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단,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적립보험료” 라 한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제27호(기타사항) ‘가’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3)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4)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단,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5)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및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따른 이체 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1.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장기간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22. 자유설계노후자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2종에 한함)

가. 「자유설계노후자금」은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금액으로,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 중 큰 금액의 8%를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종의 경우 계약자가 약관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감액후의 자유설계노후자금 =

$$\text{감액직전 자유설계노후자금}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유설계노후자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 직전 자유설계노후자금」이라 함은 해당 감액 발생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자유설계노후자금을 말한다.

23. Step-up 보증금액(2종에 한함)

“Step-up 보증금액”은 가입후 경과기간 별로 아래와 같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라’에서 정하는 “보증기준액”을 말한다. 단, Step-up 보증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 배를 최고한도로 한다.

나. “보증기준평가일”이란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완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시점에 해당하는 연계약해당일까지의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평가일”이라 한다.

단, 제 14 호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에 의해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나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2 종의 경우 약관 제 24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의해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나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완료일 및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나이를 적용한다.

다. “보증기준액 고정기간”이라 함은 해당 평가일부터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평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 “보증기준액”이라 함은 평가일마다 재산출하여 보증기준액 고정기간 동안 변동없이 적용하는 금액으로, 해당 평가일 직전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적립금 포함)을 말한다. 단, 보증기준액은 해당 평가일 직전 Step-up 보증금액의 100%를 최저한도로 하고, 120%를 최고한도로 한다.

마. ‘가’ 및 ‘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거나 납입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보증기준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인출직후 보증기준액

$$= \text{인출직전 보증기준액} \times \frac{(\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감액직후 보증기준액

$$= \text{감액직전 보증기준액}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24. 최저연금적립금(1종 및 2종에 한함)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1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말하며,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종료 후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의 20% 중 큰 금액을 말한다.

25.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금액 계산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단, 1종 및 2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또한 2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자유설계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잔여 자유설계적립금을 더한 금액(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잔여 자유설계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한다.

26. 조기연금개시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의 경우, 아래의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에 한해 최소거치기간 내의 연령으로 연금개시나이의 단축이 가능하다(이하 ‘조기연금개시’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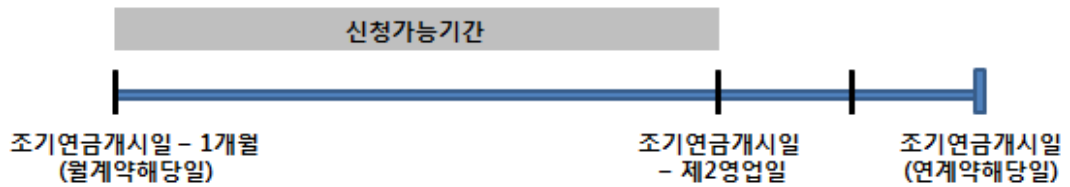
다만, 이 경우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에 연금이 개시되며 신청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1)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조기연금개시시점)이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계약

(2) 조기연금개시시점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3) 신청시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나. 신청시기 : 「조기연금개시시점 1개월전 월계약해당일」부터 「조기연금개시시점 - 제2영업일」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종의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조기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다. 조기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라.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계약자적립금은 신청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액 채권형 펀드로 이전하여 연금개시전까지 운용된다.

마.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1종의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2종의 경우 Step-up 보증금액 및 최저연금적립금은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자유설계노후자금은 개시되지 않는다.

27. 기타사항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이 계약의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회 기본보험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제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기본 적립금으로 투입한다.

(나)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이내에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②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납입일+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나. 이 보험은 연금지급기간동안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보험계약체결 이후 사망보장기간동안 분기별로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연금지급형태의 복수 선택

- (1)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 -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100세 / 3% 체증형 - 보증기간 10년, 20년), 확정연금(확정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중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거치형의 경우 동시에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없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10%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구성비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나누어서 계산한 연금액을 동시에 지급한다. 단,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최소 20%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액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마.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월 납: 기본보험료×12×Min(납입기간,10)
- (2) 일시납: 일시납보험료

바. 관련 법규의 준용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사. 1종 및 3종의 경우 약관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 2종의 경우 약관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함.

아. 노후설계자금

(1) 노후설계자금은 적립형의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1종 및 2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노후설계자금 지급일’ 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또한 2종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자유설계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잔여 자유설계적립금을 더한 금액(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 잔여 자유설계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을 계산한다.

다만,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산출한다.

(2)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란 연금수익자의 노후설계자금 수령을 위해 계약자가 0~50% 범위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하며, 연금개시시점의 30일 전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단, 노후설계자금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1)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일’ 이란 연금지급기간 중에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한다. 단,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이 있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시에 지급한다.

(4) 노후설계자금의 신청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신청한 노후설계자금 지급 이후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을 신청한 노후설계자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이후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은 없어지게 된다.

노후설계자금 지급시 수수료는 신청한 노후설계자금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노후설계자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자.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차.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카. 1종, 2종 및 3종간 변경

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전까지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종 및 2종간 변경 신청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에 제19호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8)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한다.

1종 및 2종간 변경 후에는 해당 종의 계약내용을 따른다. 단, 계약자는 1종 및 2종에서 3종으로의 변경 또는 3종에서 1종 및 2종으로의 변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타. 자유설계적립금(2종에 한함)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중 매 보험년도 초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자유설계노후자금을 연금개시시점까지 인출금액 및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자유설계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다.

파.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1) 1종의 경우 “New 100세” 를 덧붙여 “무배당 New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2종의 경우 “스텝업” 을 덧붙여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3종의 경우 “(연금재원미보증형)” 을 덧붙여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연금재원미보증형)” 으로 표시할 수 있다.